2 0 1 7 회 계 연 도 서 울 특 별 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8 2018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5. 3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8. 6. 11.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 6.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 요지 (교육행정국장 백종대)

-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수입은 총 176억 5천 7백만원으로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천만원, 이자수입 1억 4천 9백만원, 공제료 수입 57억 7천 6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구상금 6천 4백만원, 공제급여 지원금 16억 7천 2백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천 8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1억 6천 7백만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96억 9천 1백만원임
 - 지출은 총 176억 5천 7백만원으로 공제사업 55억 8백만원, 예방사업 1억 5천 8백만원, 인건비 8억 7천만원, 운영비 3억 5천 4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5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7천 6백만원, 그리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 106억 8천 6백만원임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1.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개요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1)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하 '공제기금' 이라 함)으로 같은 법 제15조2)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함)가 같은 법 제54조3)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 2017회계연도말 공제기금 현재액은 106억 8,600만원으로 직 전회계연도(96억 9,100만원) 보다 9억 9,500만원(10.3%) 증가됨

〈표 3-1〉 2017회계연도말 공제기금 현재액

(단위: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딩	당해연도 증감액				
/1 급 경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조성액 (E=A+B)		
공제기금	9,691	995	7,966	6,971	10,686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운용계획현액은 178억원이나, 수입·지출 결산액은 운용계획현액 보다 △1억 4,300만원 감소한 176억 5,700만원으로 제출됨

〈표 3-2〉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계획현액 (A)	결 산 (B)	증 감 (B-A)	항	목	계획현액 (A)	결 산 (B)	증 감 (B-A)
합 계	17,800	17,657	△143	합	계	17,800	17,657	△143
전 입 금	5,673	5,776	103		-자성 업 비	6,289	5,747	△542
보조금	1,857	1,857	0	인력: (인)	운영비 건 비)	930	870	△60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9,954	9,691	△263	기본 (물 ⁾	- 경비 건비)	396	354	$\triangle 42$
이자수입	146	3 149	3	.,	치 금 이월금)	10,185	10,686	501
기타수입	170	184	14					

2. 검토내용

가. 수입결산

○ 2017회계연도 수입결산액은 176억 5,700만원으로 계획현액(178억원) 대비 △1억 4,3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3〉 공제기금 수입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

					2	017회 계	•		2 0 1 6	직 전
항 목	세	부	내	역	수 입 계획현액 (A)	수 입 결 (B)	산 액) 구성비	계획현액 대 비 증 감 (B-A)	2 0 1 0 결 산 (C)	회계연도 대 비 (B-C)
ğ	}		계		17,800	17,657	100.0	△143	15,999	1,658
	소			계	5,673	5,776	32.7	103	5,734	42
전입금	공	제 료	수	입	5,673	5,776	32.7	0	5,674	102
	교	육금그	그기투	크금	0	0	0.0	0	60	△60
	소			계	1,857	1,857	10.5	0	12	1,845
עקק	공지	제 운	급	여금	1,672	1,672	9.5	0	0	1,672
보조금	교 공	육활동 제 료	등참 o 지 원	년자 1 1 금	18	18	0.1	0	12	6
	학피	교 안 해자상	전 시 담지	- 고 원금	167	167	1.0	0	0	167
	소			계	9,954	9,691	54.9	△263	10,029	△338
예치금 회 수	전	기	이 월	금	9,954	9,691	54.9	△263	10,014	△323
	전'	년도 사	-고이	월비	0	0	0.0	0	15	△15
이 자 수 입	0]	자 수	입	등	146	149	0.8	3	140	9
	소			계	170	184	1.0	14	84	100
기 타 수 입	소	방	수	익	120	120	0.7	0	20	100
	학.	교폭력구	¹ 상금:	회수	50	64	0.4	14	64	0

-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인 **예치금회수**⁴) 결산액은 96억 9,100만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176억 5,700만원)의 54.9%이며, 수입계획현액(99억 5,400만원) 보다 △2억 6,300만원 감소한 바,
 - 2017년도 공제기금 운용계획⁵⁾ 수립 당시 직전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해 추정한 사용액⁶⁾(59억 8,500만원)이 실제 직전회계연도 공제기금 결산⁷⁾ 사용액(63억 800만원) 보다 증가(3억 2,300만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3-4〉공제기금 예치금회수(전년도말 조성액) 비교

(단위: 백만원)

_		전전년도말 조 성 액	전	년도 중 증감	액	전년도말
 	구 분 조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조 성 액 (E=A+B)
직전회:	계연도	10.000	A 220	F 070	C 200	9,691
결	산	10,029	△338	5,970	6,308	(수입결산액)
직전회:	계연도	10.020	^ 7E	F 010	E 00E	9,954
가 결	현 산	10,029	△75	5,910	5,985	(수입계획현액)
즈	감	0	△263	60	323	△263

○ 공제료 수입 결산액은 57억 7,600만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176억 5,700만원)의 32.7%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분 수입액8)
(79억 6,600만원)의 72.5%에 해당함

^{8)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전입금(공제료수입), 보조금(공제급여지원금,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소방수익, 학교폭력구상금회수) 등 당해연도 조성액

					(단위 : 백만원)
Ī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E=A+B)
	9,691	995	<u>7,966</u>	6,971	10,686

⁴⁾ 기금운용 상 금융기관 등에 예치되어 전년도에서 이월(사고이월 등 포함)된 자금

⁵⁾ 우리 의회에 2016.11.7.에 제출

⁶⁾ 직전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비융자성사업비(공제사업비, 학교폭력지원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등 해당연도분 지출액

⁷⁾ 우리 의회에 2017.05.31.에 제출

- 공제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및 제4항⁹)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 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 2017년도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¹⁰⁾과 동일하게 결정하고 2017년도 공제료단가를 적용시켜 공제료 수입(학교급별 공제료단가 × 학교급별 학생수)을예상하였으나, 결산액(57억 7,600만원)은 수입계획현액(56억 7,300만원) 보다 증가(1억 300만원)되었음
- 동 수입항목의 결산액(57억 7,600만원)이 수입계획현액(56억 7,300만원) 보다 1억 300만원 증가된 것은 전체 학생 수의 결산인원(1,045,711명)이 계획인원(1,053,468명) 보다 △ 7,757명 감소되었으나 공제료 단가가 가장 높은 고등학생 수의 결산인원(284,324명)이 계획인원(273,359명) 보다 10,965명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단위 : 원)

회계연도	Ŷ	초	중	고	평균
2017	1,940	3,370	6,840	8,510	5,165
2016	1,940	3,160	6,360	8,020	4,870
2015	1,860	2,940	5,920	7,210	4,483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료)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¹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 공제료 수입이 당해연도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학생 수 추산에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학교급별 공제료수입 계획 대비 결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다의 · 배마의)

구분	2017 🗷	계획(A)	2017 곡	멸산(B)	증감(B-A)		
] T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계	1,053,468	5,673	1,045,711	5,776	△7,757	103	
유치원	91,026	177	85,078	165	△5,948	△12	
초등학교	434,731	1,465	428,355	1,443	△6,376	△22	
중학교	233,461	1,597	227,134	1,556	△6,327	△41	
고등학교	273,359	2,326	284,324	2,477	10,965	151	
특수 등	20,891	108	20,820	135	△71	27	

○ 보조금 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지원금 수입으로 교육 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11), 공제급여 지원금1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금1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회계연도 결 산액은 18억 5,700만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176억 5,700만원) 의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분 수입액14)(79억 6,600만원)의 23.3%에 해당함

^{14)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전입금(공제료수입), 보조금(공제급여지원금,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 이지수입, 기타수입(소방수익, 학교폭력구상금회수) 등 당해연도 조성액

				(27) - 722/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E=A+B)
9,691	995	<u>7,966</u>	6,971	10,686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료 지원금

^{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

^{1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하여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지원금

- **이자 수입** 결산액은 1억 4,900만원으로 수입계획현액(1억 4,600 만원) 보다 300만원 증가하였고, 직전회계연도(1억 4,000만원) 보다 900만원(6.4%) 증가한 것으로
 - 직전회계연도에 90억 1,400만원이었던 예치금 규모가 2017회계 연도에는 101억 6,600만원으로 11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수익률(1.3%)은 직전회계연도(1.2%) 보다 0.1%p 높아진 것으로 검토됨

〈표 3-6〉 공제기금 이자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예 금		정기예금(저	축보험 포함)	기타예금		
연도		총예금이자 ^{주1} (나=C+D)		일평균 잔액(A)	정기예금 이자(C)	일평균 잔액(B)	기타예금 이자(D)	
2017	10,166	132	1.3	8,958	130	1,208	2	
2017		(100.0)			(98.5)		(1.5)	
2016	9,014	114	1.2	8,384	113	630	1	
2016		(100.0)			(99.1)		(0.9)	

주1. 수입운용명세서 이자수입(1억 4,900만원) 중 국세환급금 및 구상금이자수입 제외

- **기타 수입** 결산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¹⁵⁾ 및 정관¹⁶⁾에 따른 수익사업인 소방안전점검 대행사업의 이익금 1억 2,000만원과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 상금 6,400만원을 합한 1억 8,400만원으로
 - 소방안전점검 대행사업 이익금(1억 2,000만원)은 수입계획현액 (1억 2,000만원)과 일치하고,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6,400만원)은 수입계획현액(5,000만원) 보다 1,400만원 증가된 것임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16)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2.}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화경개선 사업

^{3.}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4.}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5.}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

^{6.}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나. 지출결산

○ 2017회계연도 지출결산액은 176억 5,700만원으로 계획현액(178억원) 대비 △1억 4,3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7〉 공제기금 지출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

				2	017회 7	계 연 도		2016	백만원, %) 직 전
항 목	- 세 부 내 역		지 출 계획현액 (A)	지 출 결 (B)	산 액) <i>구</i> 화	계획대비 증 감 (B-A)	2010 결 산 (C)	회계연도 대 비 (B-C)	
합		7	계	17,800	17,657	100.0	△143	15,999	1,658
	소		계	6,289	5,747	32.6	△542	5,199	548
		소	계	6,001	5,666	32.1	△335	5,099	567
	공 제	사고보	상비	5,617	5,344	30.3	△273	4,802	542
비용지성 사업비	시업비	소 송 의 료	및 자 문	176	164	0.9	△12	132	32
		사 업	비	208	158	0.9	△50	165	△7
	학교	학교폭력피해지원		120	76	0.4	$\triangle 44$	100	△24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지원		168	5	0.0	△163	0	5	
	소		계	930	870	4.9	△60	718	152
인 력 운영비	그		여	790	754	4.3	△36	609	145
	수		당	140	116	0.7	△24	109	7
	소		계	396	354	2.0	△42	391	△37
기 본 경 비	업 무	부 추 진	비	30	30	0.2	0	30	0
	일 변	<u>.</u> 운 영	刊	366	324	1.8	△42	361	△37
예치금	차 기	이 월	금	10,185	10,686	60.5	501	9,691	995

- **예치금**은 기금운용 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지출계획현액(101억 8,500만원) 보다 5억 100만원이 증가된 106억 8,600만원으로 제출됨
 - 동 지출항목의 결산액(106억 8,600만원)이 당초 계획(101억 8,500만원) 보다 증가(5억 100만원)한 것은 비융자성사업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의 지출결산액(69억 7,100만원)이 지출계획현액(76억 1,500만원) 보다 감소(△6억 4,400만원)한 것이주요 원인으로 검토됨
- □ 비융자성사업비는 당초 지출계획현액(62억 8,900만원) 보다 △5억 4,200만원 감소된 57억 4,700만원이 지출된 바, 사고보상비인 공제급여 지급규모17) 및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지급규모가 당초 지출계획현액 보다 각각 △2억 7,300만원, △1억 6,300만원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검토됨
 - 2017회계연도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집행액(57억 4,7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51억 9,900만원) 보다 10.5%, 5억 4,800만원 증가된 것으로서 공제급여 지급 증가(5억 4,200만원)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됨
 - 공제급여 중 가장 큰 비중(67.8%)을 차지하는 요양급여(36억 2,100만원)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보다 지급건수는 소폭 감소 하였으나 비급여 항목 진료비 추가 지급 등으로 직전회계연도

¹⁷⁾ 계획 수립당시의 공제급여 지급규모(12,521건×평균 45만원) 보다 실제 결산시 공제급여 지급규모 (12,585건×평균 42만원)가 줄어듬

(35억 1,200만원) 대비 1억 900만원 증가하고, 장해급여 (16억 7,800만원)의 경우 지급건수 증가로 직전회계연도(6억 9,200만원) 대비 9억 8,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3-8〉 공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7	7(A)	2010	6(B)	증 감(A-B)		
ੀ ਦ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585	5,344	12,783	4,802	△198	542	
요양급여	12,538	3,621	12,756	3,512	△218	109	
장해급여	45	1,678	24	692	21	986	
간병급여	0	0	0	0	0	0	
유족급여 ^{주1} (장의비)	2	45 (7)	2	597 (16)	0	△552 (△9)	
위로금, 보전비용 등	0	0	1	1	△1	△1	

주1. 유족급여 금액에는 ()안의 장의비가 포함됨

다. 기금 조성액

O 2017회계연도 말 공제기금 현재액은 106억 8,600만원으로 직 전회계연도(96억 9,100만원) 보다 9억 9,500만원(10.3%) 증가된 바.

〈표 3-9〉 2017회계연도말 공제기금 조성액

(단위:백만원)

치게성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회계연도	在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E=A+B)
2017	9,691	995	7,966	6,971	10,686

○ 지난 2013회계연도 이후 당해연도 사용액이 당해연도 조성액을 초과 하여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회계 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이 당해연도 사용액을 초과하여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0〉최근 5년간 연도말 공제기금 조성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조성액	Ę	당해연도말 조성액		
외계한도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E=A+B)
2017	9,691	995	7,966	6,971	10,686
2016	10,029	△338	5,970	6,308	9,691
2015	10,030	△1	6,123	6,124	10,029
2014	12,450	△2,420	5,543	7,963	10,030
2013	15,104	△2,654	4,858	7,512	12,450

○ 다만, 2017회계연도 일시적인 서울시교육청 전입금 증가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으나,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사용액 (69억 7,100만원)의 76.7%를 차지하는 공제급여(53억 4,400만원)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¹⁸⁾하고 있어 향후 공제기금 감소로 연결될 수 있어 기금 조성 규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2017	2016	2015
사용액	6,971	6,308	6,124
공제급여 지급액	5,344	4,802	4,713
증감액	542	89	_
증감률	11.3	1.9	_

¹⁸⁾ 공제급여 지급 규모 현황(2015~2017회계연도)

Ⅳ. 질의토론 요지: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없음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488** 제출연월일: 2018년 5월 31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교육감

1. 사업개요

가.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목적

-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
- 교직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보전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수행

2. 주요내용

○ 총괄 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현재액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9,690,602	995,463	7,966,043	6,970,580	10,686,065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전금	보급	<i>광</i> 屆 수 입	예치금 화수	야 십	기타 수입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인건비)	기 본 경 비 (운영비)	예치금	다음하는 이월액
17,656,645	0	1,857,286	5,775,983	9,690,602	148,835	183,939	17,656,645	5,746,276	870,114	354,190	10,686,065	30,000

- ※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급+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 ※ 기타수입: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운영수익금+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 ※ 고유목적사업비: 공제사업+예방사업+학교폭력피해지원+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 수입결산은 17,656,645천원으로
 - 공제급여 지원금 1,672,000천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7,706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167,580천원
 - 공제료수입 5,775,983천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9,690,602천원
 - 이자수입 148,835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63,939천원임
- 지출결산은 17,656,645천원으로
 - 공제사업 5,507,676천원
 - 예방사업 157,884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75,470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5,246천원
- 인건비 870,114천원
- 운영비 354,190천원
- 차년도 예치금(2017년도말 현재액)은 10,686,065천원임

3. 참고사항

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백만원)

		예치 및 예탁액									
구 분	예치(탁)처	치(탁)처 2014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⑤	증 감 (b-a)	비고				
합계		10,030	10,029	9,691	10,686	995					
	농협은행	7,767	7,766	8,128	10,038	1,910					
	우리은행	1,700	1,700	1,000	400	-600					
	임차보증금	563	563	563	248	-315					

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조 성 액								집	행	액				
연도별	계 @	전입금	보조금	공제료 수입	구상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⑤	공제·예방 및 상담지원비	학교폭력 피해지원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잔액 (a)-(b)
~2010년 까지	58,795	9,439		34,278			14,718	360	43,693	37,127		6,566				15,102
2011	4,245	30		3,518			577	120	4,709	3,795		914				-464
2012	6,145	30	1,668	3,710			617	120	5,679	4,441	71	1,167				466
2013	4,858	60		3,895	52		731	120	7,512	6,104	70	1,338				-2,654
2014	5,543			4,744	53		626	120	7,963	6,624	92	1,247				-2,420
2015	6,123	60	175	5,445	62		261	120	6,124	4,930	88	1,106				-1
2016	5,970	60	12	5,674	64		140	20	6,308	5,099	100	1,109				-338
2017	7,966		1,857	5,776	64		149	120	6,971	5,672	75	1,224				995
계	99,645	9,679	3,712	67,040	295		17,819	1,100	88,959	73,792	496	14,671				10,686